기 안 용 지

훈령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181.7-66 (전화번호 307)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26.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장	10.	협조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훈령제 434호
기안책임자	김광시	75. 10.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결재 1975. 10. 29 시장

제목 서울특별시립 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정 제정

제 1 안

수 신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립 정신병원과 결핵병원(서대문)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의사에게 임상 연구비를 지급하여 임상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므로서 정신병환자 및 결핵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퇴치에 기여하고저.

2. 서울특별시립 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코저 합니다.

첨부 규정안 1부.

정서 / 관인 / 발송

제 2 안

수 신 의약과장　　　　　　　　　　발신 법무담당관

제 목 동 건

1. 서울특별시립 병원 임상 연구비 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키로 결정되었기 통보하여 드립니다.
첨부. 규정안 1부.

제 2안
수 신 문화공보실장 발신 법무담당관.
제 목 동 건.
서울특별시립 병원 임상 연구비 지급 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키로 결정되었기 시보에 게재 공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규정안 1부 끝.

결재 1975. 4. 30.

서울특별시립 병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5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2)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3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연구과제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동일인에게는 같은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수 없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개 과제식 따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개 과제에 대한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음이 판명 된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병원장은 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안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제 정 사 유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과 결핵병원(서대문)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의사에게 임상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함으로서 정신병환자 및 결핵환자의 효율적 진료와 퇴치에 기여코저 함.

제 정 사 유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과 결핵병원(서대문)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의사에게 임상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함으로서 정신병환자 및 결핵환자의 효율적 간호와 퇴치에 기여코저 함.

보건사회부 령 제489호

75. 6. 29.

국립결핵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결핵병원 직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에 관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구비는 국립결핵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 이상의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제3조(연구비 계획서의 제출) (1)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구계획서를 국립결핵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연구완결예정 연월일
4. 연구비의 소요명세
5.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2) 국립결핵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급의 한계) (1) 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5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2)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3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연구과제마다 1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2개과제씩 따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개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시장

급하되 국립결핵병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연구비는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음이 판명된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국립결핵병원장은 매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1월안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No. 5

법 무 전

1975. 9. 26.

수신: 의약국장

제목: 자료 보완 요구

1. 의약1817-1643 (75. 9. 24)로 의뢰한 규칙안 심의에 필요하오니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운영규칙 제[illegible]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안 4부

(2) 제정이유 〃

(3) 관계조문 발췌문(보사부 훈령) 〃

(4) (타자화 하여 제출 바람)

(5)

발신: 법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법제계장 [illegible]

서 울 특 별 시

외약 181.7-1653 1975. 9. 24.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임상 연구비 지급 규정 제정의뢰.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안, 1 부. 끝.

담당	법제계장	법무담당관	

[illegible]

외 약 과 장

1975. 9
서울특별시

서울特別市立病院臨床研究費支給規程(案)

医薬課長	保健社会局長	第二副市長	第一副市長	市長
			9.16	

法務担当官　豫算担当官　企劃管理官

서울特別市

0079

(　)規 程 案

서울特別시 訓令第　　號

서울特別市立病院 臨床研究費支給規程을 아래와 같이 制定한다.

1975. 9.

서울特別市長 具 滋 春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서울特別市立病院 職制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精神病과 結核에 關한 臨床研究에 必要한 臨床研究費의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對象) 研究費는 서울特別市立 精神病院과 結核病院 醫師中에 當하는 職務

地方公務員 ?級 以上이며 醫師로서 臨床研究를 하는 者를 對象으로 하되 그 臨床研究의 課題別로 한다.

第?條 (研究計劃書의 提出) ① 研究費의 支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明示한 研究計劃書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研究課題
2. 研究內容
3. 研究의 完結豫定年月日
4. 研究費의 所要明細
5. 研究參加者가 있을 때에는 그 名單
6. 其他參考事項

② 病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研究費를 支給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條 (支給의 限界) ① 研究費는 每研究課題마다 50万원 以下의 金額을 支給한다.

② 研究課題가 高度하여 2人以上이 共同으로 研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每研究課題마다 100万원 以下의 金額을 支給할수 있다.

③ 同一人에 대하여는 同時에 2個以上의 研究課題에 對한 研究費를 支給할수 없다.

④ 第 [illegible] 條 第 [illegible] 項의 規定에 依하여 [illegible] 研究課題에 對한 研究費를 支給할수 없다.

第5條(支給方法) 研究費는 月別 또는 分期別로 配定된 豫算의 範圍안에서 支給하되 研究遂行上 不得已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計算給을 할수있다.

第6條(研究費의 目的以外의 使用禁止等)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된 研究費는 該當 研究目的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되며 所定의 研究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研究費를 目的以外에 使用한 事實이 判明된 때에는 이미 支給받은 研究費의 全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7條 [illegible]

[illegible]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6年 1月 1日 부터 施行 한다.